

키르기스스탄 이식쿨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및 사전타당성 조사

과업지시서

2022. 07.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목 차

1. 개 요.....	1
2. 과업기간.....	2
3. 과업내용.....	2
4. 과업의 일반원칙.....	5
5. 과업수행 방법.....	9
6. 과업성과품 제출.....	11
7. 보안대책.....	13

I. 과업지시서

1. 개요

□ 과업명 : 키르기스스탄 이식쿨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 조사

□ 과업배경

- 해당 사업지는 이식쿨 국제공항 남쪽에 있는 이식쿨 호수 경계지역으로서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이식쿨 지역을 스마트수변형 관광도시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또한 필요
- 이식쿨 지역은 자연환경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관광자원(천산산맥, 천연협곡)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특히 주변국(중국, 우즈베크 등)의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관광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대상지가 국유지인 점이 사업추진개발에 있어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리적으로 도로-철도-공항이 인접하여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물류 요충지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가개발 전략상 교통, 인프라 현대화 계획,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계획, 이식쿨 통합개발계획이 등 상위 및 관련계획이 존재하는바, 사업개발에 있어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 과업목적

- 스마트 수변형 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현황분석, 기초조사 등을 토대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관광

도시 조성 방안, 기반시설 공급계획 및 프로젝트 실행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하며,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수반 되어야 함

[KCN 신청 개요]

- (프로젝트 명칭) Issyk-Kul Smart City Project
- (프로젝트 위치) 키르기스스탄 이식쿨 국제공항 남단 위치/ 1.6km²
- (신청 요청사항) Basic Plan, Pre-Feasibility Study

-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키르기스스탄 경제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과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반영하여야 함
- ※ 과업수행자는 키르기스스탄 경제부 및 현지 이해관계자, 키르기스스탄 관련 팀코리아 참여기관, Collaboration Team,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협업하여야 하고, 필요시 사안별로 전문기관에 하도급 등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e.g. 현지 시장조사 등은 현지 리서치 및 마케팅 수행 경험이 있는 글로벌 또는 로컬서비스(자문) 회사에서 시행)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3. 과업내용

1) 프로젝트 현황 분석

○ 개발현황 기초조사 분석

- 사업지 및 주변지역 기초분석
- 자연, 사회, 문화 환경 조사
- 국가 및 지방단위 상위 및 관련 계획 조사 분석
- 포괄적 현황분석

- 키르키스스탄 및 사업대상지 관광산업 시장 및 동향진단 분석
 - 국내외 관광객 특성 분석
 - 관광수용 능력, 접근성, 인프라 분석
 - 관광 개발 사례 및 시사점 도출
- 스마트 관광도시개발 필요성 검토
 - 스마트관광의 필요성 분석
 - 스마트 관광도시조성사업 등에 대한 이점

2) 스마트시티 기본개념 및 계획수립

- 개발비전 및 목표 수립
- 개발 방향 수립 및 적용가능한 스마트 요소 분석
 - 스마트 관광도시를 위한 특별 개발방안 수립(자연환경 보존, 문화 유산 복원 및 복구를 반영한 통합개발 방안 제안)
 - 시장수요를 반영한 적용가능한 스마트 요소 결정
 - 스마트시티 개발개념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 개발 시행을 위한 지역경계 설정
 - 사업대상지 개발계획 수립(토지이용계획, 인구 및 주택공급 계획, 공원 및 공간활용계획, 도로 및 운송계획 등)
 - 인프라 공급계획 수립(인프라 설치, 공급 및 처리시설 계획, 지역간 운송 연결로 개선 계획 등)
 - 자연·문화자원 보존방안 및 환경영향 최소화 계획수립

3) 사업 이행계획 수립

- 사업 이행계획 수립

- 사업구조 수립(현시점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최적화된 사업구조 제시로서, 사업 조직 구성과 운영방안 계획,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 등)
- 사업 실행 로드맵 수립(실행계획 포함)
- 단계별(연도별) 사업 이행 계획 수립
- 예산 및 집행 계획 수립
- 관련 사업에 대한 실행 계획 수립

4) 예비 타당성 분석

- 경제성 분석

- 단지조성 및 인프라개발을 위한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 토지비용, 건설비용, 금융조달 비용 및 기타 비용 포함한 사업비구성
- 토지이용 단위별 매각가격 산정 및 자금 회수 방안을 포함한 매각계획 수립
- 경제성 분석(NPV, IRR, DSCR 등) 및 민감도, 시나리오 분석
- 재무모델 작성

5) 사업국 관계자 역량강화활동

- 사업관계자 및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 이식쿨 사업 관계자 및 공무원 등 실무급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한국형 수변 스마트시티(예, 부산에코델타시티) 경험 공유,

사업관련 현장방문 등을 실시

- 중간보고회와 연계 수행

※ 역량강화의 경우, 특수한 상황으로 현지 출장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온라인 등 적정 대안으로 대체 가능

○ 현지 워크숍 개최(1회 이상)

- 과업성과의 제고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 기관 등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진행
- 국내외 관련 사례 및 경험 등을 제시하여 관계자 역량강화 도모
- 성과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또는 초청연수시 병행하여 진행 가능

6) 후속 사업방안 제시(PPP 투자 등)

-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이 참여가능한 후속사업 방안 제시

4. 과업의 일반원칙

□ 자료활용

-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 과업수행원칙

- 최종낙찰자(이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 법률, 기술,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 외부전문기관 포함)가 부담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일반조건

-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 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영수증 등)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특별조건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
-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할 경우, 기존 인력 대비 업무수행역량이 동등 이상인 자로 한정하며,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성과물 작성

-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 용어는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납품해야 함
-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 양식,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해야 함
- 공정보고, 현지조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 파일로 제출해야 함

□ 기 타

-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

5. 과업수행 방법

□ 전문가 자문

-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

□ 현지조사

- 사업대상국의 인문, 자연, 경제,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 조사자(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
 -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 COVID-19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지 출장 조사가 어려울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지 업체 활용 등 대안 시행

□ 상대국 실무협의

- 대표사가 정기회의(온라인 포함) 개최 주관
 - 업무추진 관련 e-mail 및 SNS를 통한 실무협의
 - 현지 Contact point 운영(수행사 내 현지 인력 있을 시)
- * 필요시 우리공사 또는 국토부의 상대국향 협의 공문 발송 요청

□ 통역 제공

- 필요시 각 보고회, 초청연수, 현지 협의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지어 또는 영어 통역 사용

□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

-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제출 하여야 함
- 주간단위 계획/실적 보고 제출(이메일)
- 국토부 및 공사 요청시 추진현황 보고회의 참석 및 자료작성

□ 협업

- 과업수행자는 키르기스스탄 정부 및 현지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협업하여야 하고, 필요시 사안별로 전문기관에 하도급 등 시행할 수 있음.

* 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e.g. 현지 시장조사 등은 현지 리서치 및 마케팅 수행경험이 있는 글로벌 서비스(자문) 회사에서 시행)

□ 준공내역서 회계정산

- 준공일이 도래되는 시점에 맞춰 준공내역 정산을 제3의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정산토록 함

6. 과업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 (현지수행*)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착수 보고회는 현지에서 수행(국문, 영문 보고서 PPT/한글양식 국문 보고회 개최방안을 보고회 7일 이전 제출)

* 여건에 따라, 국토교통부,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방안 마련

□ 중간보고(국내수행*)

-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국·영문 보고서/ 국·영문 요약보고서)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 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중간보고회는 상대국 초청연수(역량강화 활동)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수행(국문, 영문보고 PPT 준비/한글양식 국문 개최방안을 보고회 7일 이전 제출)

* 여건에 따라, 국토교통부,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방안 마련

□ 최종보고(현지수행*)

-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 단,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국문, 영문 보고서 PPT/국·영문 요약보고서/ 한글양식 국문 보고회 개최방안 제출)
-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국·영문 각 25부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종보고서,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USB 3개)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국·영문) 및 프레젠테이션(국·영문 PPT)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요약본) 키르기스스탄 현행 규정 및 양식을 준수하는 요약본 별도작성 제출(국·영문·필요시 현지어 각 10부)
- 최종 보고회는 현지에서 수행(국문, 영문 보고서 PPT/한글양식 국문 보고회 개최방안을 보고회 7일 이전 제출)

* 여건에 따라, 국토교통부,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방안 마련

□ 수정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정부 및 우리기관의 요청사항 등이 있는 경우(예, 시범사업의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요청)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국·영문 보고서 통합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수정보고서, 수정 참고자료,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 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 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

를 수행하게 해야 함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